

발전평가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7. 3. 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.)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발전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임무 및 권한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발전계획 추진상황점검 및 성과평가
2. 발전계획 추진상황점검 및 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12인 이내로 하되, 감사실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,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회 간사는 수원대학교 교원 또는 일반직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 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운영)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6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위원장은 그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 (전담팀) 위원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팀을 둘 수 있다.

부 칙

(1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